

재활용사업 전국자활기업 설립 및 전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서

(재)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자활협회'), (사)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신뢰와 우호관계를 기초로 재활용 전국자활기업 설립 및 재활용 전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중앙자활', '자활협회', '연합회'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 업무협력을 통해 정보제공, 업무 연계 및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규모화, 대표적 자활사업 모델 육성 및 상호조직 발전의 모범적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의 내용】

'중앙자활', '자활협회', '연합회'는 협약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의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전국자활기업 설립을 위한 업무 협력
2. 재활용사업 전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3. 상기 1, 2항 추진을 위한 상호 보유 콘텐츠 교류
4. 상기 1, 2항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분석, 홍보 공동 수행
5. 기타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업무
6. 사안별 세부 협력사항은 실무자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 3 조 【업무협력 추진방법】

1. 업무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정보교환은 일차적으로 각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서 시행한다.
2. 당사자 간 관심분야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 【보안】

1. 본 협약서에 의해 교환되는 비밀정보 및 문서는 당사자 간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위에 명시한 보안의 의무는 본 협약 효력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5 조 【 유효 기간 】

1.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 협약의 해지 】

‘중앙자활’, ‘자활협회’, ‘연합회’ 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해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및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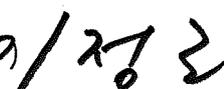
제 7 조 【 기타 사항 】

1. 본 협약의 일부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14일

(재) 중앙자활센터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원 장 이 정 근 (인) 

(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115 이화빌딩 3층

협회장 오 상 운 (인) 

(사)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86 SR센터 내

이사장 강 재 원 (인) 